

2015년 도 문화재 위원회

제5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9. 11. (금요일), 14:00~17: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성자, 김영운, 미등, 박상미, 박영규,
전경옥, 전용일, 채금석, 허영일(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 의 사 항】

1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공 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공 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공 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 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 개)
6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 선정	(비공개)

【검토사항】

1	‘김천금릉빛내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보유자 인정 예고	(공 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인정 예고	(공 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및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승자 인·선정 여부 검토	(공 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인정 조사 여부 검토	(공 개)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보고	(공 개)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5-001

1.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 제안사항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5.7.3.)에서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7.16.~)하고,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포함(‘15.1.23.)
- 조사위원 검토(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15.3.13.)
- 조사자 사전회의(‘15.4.3., 4.17.)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실시(‘15.4~6월)
- 종목 지정 예고 검토(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15.7.3.)
 - ‘아리랑’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2) 예고사항(관보 제18555호/2015.7.16./문화재청 공고 제2015-268호)

- 예고내용
 - 문화재명 : 아리랑
 - 지정사유
 -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계통 악곡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의 하나임. 또한, 아리랑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민중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노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전승되어옴. 이에 따라 아리랑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함.

-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3)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검토

- 일시/장소 : 2015.8.21. 14:00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소위원회 위원 : 5명(문화재위원 2명, 전문위원 1명, 관계전문가 2명)
- 검토결과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아리랑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므로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무형문화재로서 ‘아리랑’의 주된 기·예능은 민요에 있으므로 아리랑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전반의 국면은 지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현상은 아리랑의 현대적 활용으로 볼 수 있음.

라. 검토의견

-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함.
 - 특정 보유단체나 보유자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5.5.22.)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김석명을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하고,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6.4.~)한 후에 보유자 인정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 지 정 일 : 1985.12.1.
- 전승자현황
 - 보유단체 : 고성농요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1명) : 김석명(‘39년생, 남, 앞소리, ‘92.7.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이주수(남, 앞소리, ‘07.3.12. 선정)

2) 추진경과

- 고성농요보존회 내부갈등 민원 접수, 보존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10.5월)
- 고성농요보존회 직권조사 실시(‘13.3.15.)
- 고성농요보존회 국고금 유용 및 횡령 등에 대한 고발(‘13.5.15.)
- 고발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 항고(‘13.11.27.) 및 재항고(‘14.1.21.)
-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15.1.5.) : 구약식벌금 총100만원
- 구약식 벌금 100만원에 대해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 납부하여 형 확정(‘15.2.9.)
-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검토(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15.5.22.)

3) 예고사항(관보 제18525호/2015.6.4./문화재청 공고 제2015-219호)

○ 예고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김석명 (金石明)	남	1939.1.23.	앞소리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길 **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 예고함.

※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검토

- 일시/장소 : 2015.7.23. 14:0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소위원회 위원 : 5명(문화재위원 4명, 관계전문가 1명)
- 검토결과

-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

라. 검토의견

-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김석명의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5.7.3.)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7.16.~)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 지정일 : 2005.9.23.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장용훈(남, ‘37년생, 한지 제조 / ‘10.2.11. 인정)
 - 홍춘수(남, ‘42년생, 한지 제조 / ‘10.2.11. 인정)

2) 확인조사 개요

- 기 간 : 2015.5.21.(목)
- 장 소 : 보유자 공방(경기도 가평군)
- 확인자 : 이상민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장용훈
 - * 장용훈보유자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으로, 실제 면담은 장성우(장용훈보유자의 자)와 실시

3) 확인결과

- 장용훈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예고사항(관보 제18555호/2015.7.16./문화재청 공고 제2015-270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장용훈 (張容熏)	남	1937.11.28.	한지제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작은매골길**(상천리)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라. 검토의견

○ 장용훈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장용훈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 지 정 일 : 1968.12.2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조창훈(‘41년생, 남, 대금정악, ‘09.12.3. 인정)

2) 추진경과

- 2014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3.12.31.)
- 해당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 선정 관련 자료 제출(‘14.2월, ‘15.7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8.27.) 및 선정조사 실시(‘15.8.31.)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5.8.31.(월)
 - 조사자 사전회의 : 12:40~13:40
 -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 14:00~17: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풍류극장(서울)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3명) : 윤○○, 임진옥, 홍종진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
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임진옥, 홍종진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함.
 - 해당 기·예능은 ‘대금연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바. 특기사항

- 김영운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함.

5.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8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 지 정 일 : 1983.6.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박정임(‘39년생, 여/발탈, ‘00.12.14. 인정)
 - 조영숙(‘34년생, 여/발탈, ‘12.2.2. 인정)

2) 추진경과

- 2014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3.12.31.)
- 해당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 선정 관련 자료 제출(‘14.1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7.24.) 및 선정조사 실시(‘15.8.14.)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5.8.14.(금) 13:00~17:00
- 조사장소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풍류극장(서울)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2명) : 문영식, 정○○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
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문영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함.
 - 해당 기·예능은 ‘발탈·어릿광대’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6.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 선정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5-007

1. ‘김천금릉빛내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 지 정 일 : 1985.12.1.
- 전승자 현황
 - 보유단체 : 이리농악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1명) : 김형순(‘33년생, 설장고, ‘85.12.1.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김익주(남, 팽과리, ‘96.5.1. 선정),
이동주(남, 상쇠, ‘92.7.1. 선정)
양승열(남, 소고, ‘89.6.15. 선정)

2) 추진경과

- 2014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2월)
- 해당 보유단체의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관련 자료 제출(‘14.2월)
-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5.1.23.)
- 현지조사 실시(‘15.6.23.)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5.6.23.(화)
 - 조사자 사전회의 : 11:00~13:30

-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 13:30~
- 조사장소 : 이리농악전수교육관(전북 익산)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2명) : 김○○, 양○○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리농악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보유자로서 전승기량이 부족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 지 정 일 : 1985.9.1.
- 전승자 현황
 - 보유단체 :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87.11.11. 인정)
 - 명예보유자(1명) : 김규수(‘24년생, 거문고, ‘14.5.13.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임수현(남, 대금, ‘90.10.10. 선정),
이정호(남, 가야금, ‘96.7.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해당 보유단체의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관련 자료 제출(‘13.4월)
- 2015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5.1.23.)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8.10.) 및 인정조사 실시(‘15.8.24.)

3)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5.8.24.(월)

- 조사위원 회의 : 13:00~13:30
-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 13:30~17:30
- 조사장소 : 이리향제줄풍류전수교육관(전북 익산)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4명) : 남○○, 오○○, 이○○, 임○○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보유자로서 전승기량이 부족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및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승자 인·선정 여부 검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및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승자 인·선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7.12.)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예고,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부결하였음.
- 이에 대한 해당 보유단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전문가 검토(‘13.11.4.), 공개행사 현지조사(‘15.4.28.~5.2.)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5.7.3.)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15.8.6.)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종목의 인·선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종목지정 및 전승자 현황

종목명	지정일	전승자 현황	
영산 쇠머리대기	1969. 2.11.	명예보유자 (1명)	김형권(‘22년생, 남/’05년 인정) * ‘79년 보유자 인정(목우전)
		전수교육조교 (2명)	정천국(남/목우전, ‘90년 선정) 조대권(남/쇠머리제작, ‘95년 선정)
영산 줄다리기	1969. 2.11.	명예보유자 (1명)	김종곤(‘38년생, 남/’08년 인정) * ‘95년 보유자 인정(줄제작)
		전수교육조교 (1명)	신수식(남/줄제작, ‘95년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5.29.~5.31./경남 창녕)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7.12.) 심의 및 검토
 - 부결함
 - 조사대상 단체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13.8월)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13.9.13.) 재심의
 - 보류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전승자 충원방침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개최('13.11.4.)
 -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14.1.10.) 재검토
 - 보류함
 - 영산쇠머리대기·영산줄다리기 공개행사 현지조사('15.4.28.~5.2.) 실시
 - 조사일자/장소 : '15.4.28.~5.2. / 경남 창녕
 - 조사자/참관 : 관계전문가 2인 / 문화재위원 2인
 - 조사목적 : 공개행사 실연과정 현지조사를 통한 전승자 인·선정여부 검토
 - 조사내용 : 공개행사 실연과정별 주요 전승자의 주체와 역할
 - ※ '14년 조류독감, 진도여객선사고 사건으로 인한 보존회 측 공개행사 연기로 '15년 조사 실시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5.7.3.) 재심의
 - 보류함
 -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검토('15.8.6.)
- 3)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검토
- 일시/장소 : 2015.8.6. 14:00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소위원회 위원 : 6명(문화재위원 4명, 관계전문가 2명)
 - 검토결과
 - 영산쇠머리대기·영산줄다리기 종목은 보유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기·예능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특정인을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선정하기 어려움.
 - 대동놀이 종목(5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유단체에 의한 집단적

전승방식을 도입함.

- 대동놀이 종목(5개) :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라. 검토의견

-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쇠머리대기 및 영산줄다리기 전승자 인·선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소위원회 검토 결과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및 제26호 ‘영산줄다리기’의 전승자는 인·선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5.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인정 조사 여부 검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제4차 회의(‘15.8.6.)
결과, 대동놀이 종목(5개)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유단체에 의한 집단적
전승방식을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이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 지 정 일 : 1970.7.22.
-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3명) : 이영재(남/줄패장, ‘00.7.22. 선정)
이성만(남/고제작, 농악, ‘00.7.22. 선정)
김선엽(남/고제작, ‘00.7.22.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3.1월)
- 해당 보유단체에서 보유자 인정 관련 자료 제출(‘13.10월)
 - 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3명
-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전승자 충원방침 관계전문가 검
토회의(‘13.11.4.)
-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13.11.8.)
- 영산쇠머리대기·영산줄다리기 공개행사 현지조사(‘15.4.28.~5.2.) 실시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5.7.3.)
-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검토('15.8.6.)
 - 일시/장소 : '15.8.6. 14:00/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소위원회 위원 : 6명(문화재위원 4명, 관계전문가 2명)
 - 검토결과 : 대동놀이 종목(5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유단체에 의한 집단적 전승방식을 도입함.
 - 대동놀이 종목(5개) :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라. 검토의견

-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소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인정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5-013

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규정

- 규 정 명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0호)
- 개 정 일 : 2015.8.27.
- 개정이유 : 문화재위원회 심의기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신설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유
재심의 근거 명확화	중요한 사실의 누락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분과간사는 재심의 요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권리구제 기회확대
의견진술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의견진술 기회제공 - 회의록에 신청인의 의견란 신설	위원회 심의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제고
심의기준 신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지침’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합리성 제고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접수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